의안번호	2220059
의 뢰 인	양부남의원
회 답 일	2026.9.2.
추계번호	26D361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・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,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	안 제10조의2(비용의 부담)	제9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,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조치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. 다만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1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10조의2(비용의 부담)	

2. 상세 사유

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상담위탁 및 치료위탁(안 제9조제1항)

○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,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되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,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다만, 스토킹행위자 중 상담위탁 및 치료위탁 조치를 받는 사람의 수와 그 중 위탁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수, 개인별 위탁비용 등을 합리

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

○ 참고로,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[1]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[2]의 유사 입법례에 따른 비용지원 액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연도별 비용지원 액수: 2022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가정·아동보호사건 치료위탁, 상담위탁 비용 지원	671	454	576	562

자료: 대법원

❑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--

1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(임시조치)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4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
6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제40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
7.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
8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제48조(비용의 부담)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2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6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
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.
7.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
8. 아동보호전문기관,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
제43조(비용의 부담)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